

등3491

마을건강사업

보건요원 행정교재



한국보건개발연구원

— 목 차 —

I . 원리와 정의	3
II . 범 위	4
III . 조 직	5
IV . 한국 보건개발 연구원	13
1 . 연구원 설립경위	13
2 . 차관협정 주요골자	13
3 . 임 무	14
4 . 기 구	14
5 . 활동내역	15
6 . 마을건강사업	17
부 록	35



I . 원리와 정의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답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는 인문계, 사회계 그리고 자연계의 여러 학문분야를 응용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한다. 나아가 보다 즐겁고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보건등 제 영역에 대하여 개인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의 기초의학이 뒷받침하는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이에 사회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상승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조직된 행정계선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지역사회의 의사, 약사, 간호원, 보건기사등의 기술요원과 일반행정요원등 보건의료관계요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확고한 법적근거
- 2) 교육훈련된 유능한 전문가, 기술자 및 사무요원 등 요원의 확보
- 3) 적절한 시설과 설비의 확충
- 4) 충분한 재정적 지원
- 5)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전전한 인사관리
- 6) 합리적인 사업의 전개
- 7) 실제적인 학문적 이론과 기술
- 8) 적극적인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

II. 범 위

보건행정의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리적 여건에 따라 약간 틀리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을 위하여 저렴양질의 의료진달체제 개발을 목적으로 3개 시범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보건 의료시범 사업인 "마을건강사업"에 있어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 2) 의료제공 및 각종 위생검사
- 3) 모자보건
- 4) 가족계획
- 5) 환경위생관리
- 6) 전염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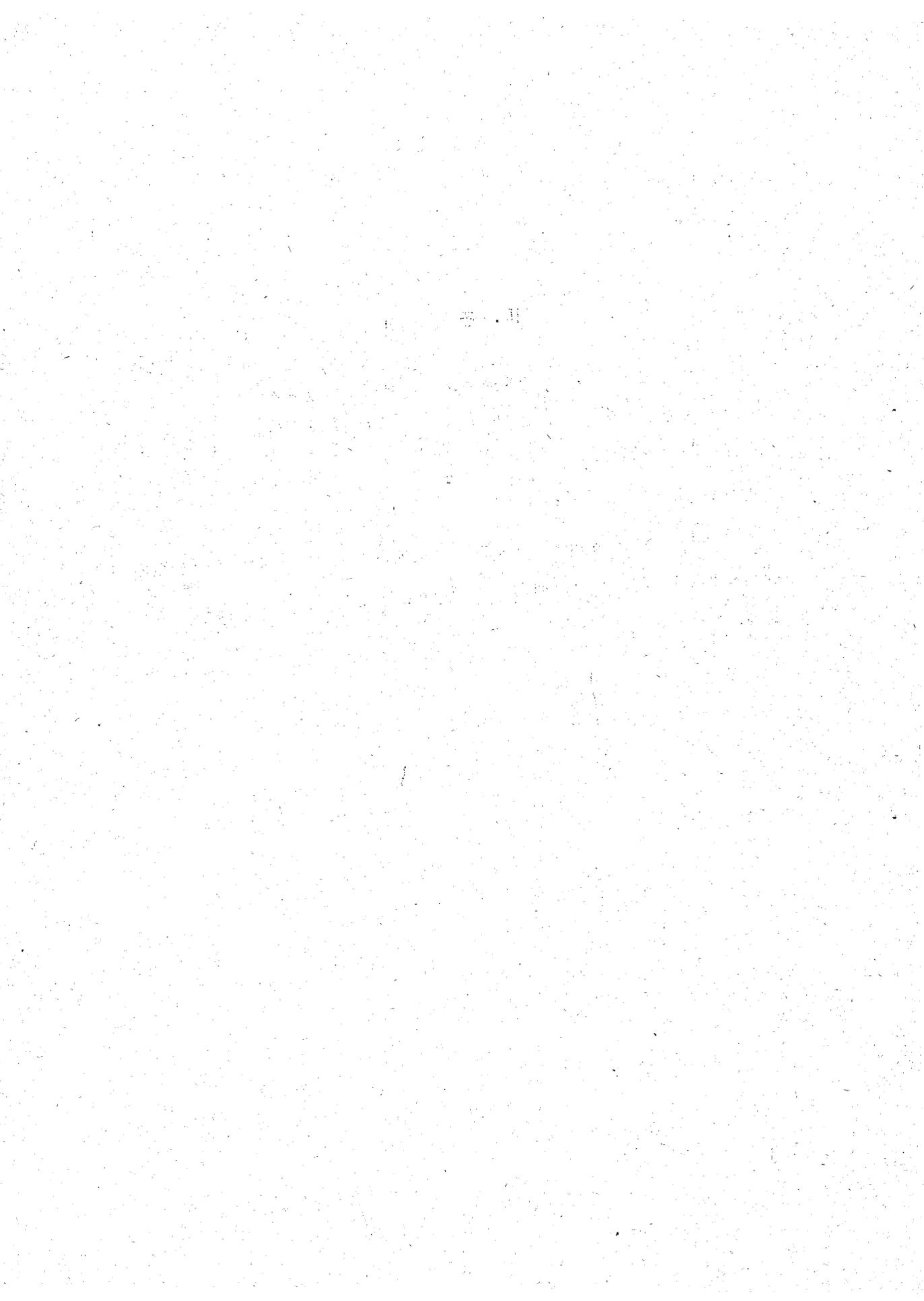
7) 보건간호

8) 각종 기록의 수집, 보존과 분석

Ⅲ. 조 직

소기의 목적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과 책임의 분배에 따른 요원의 배치는 중요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사이의 원활한 협조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어 체계화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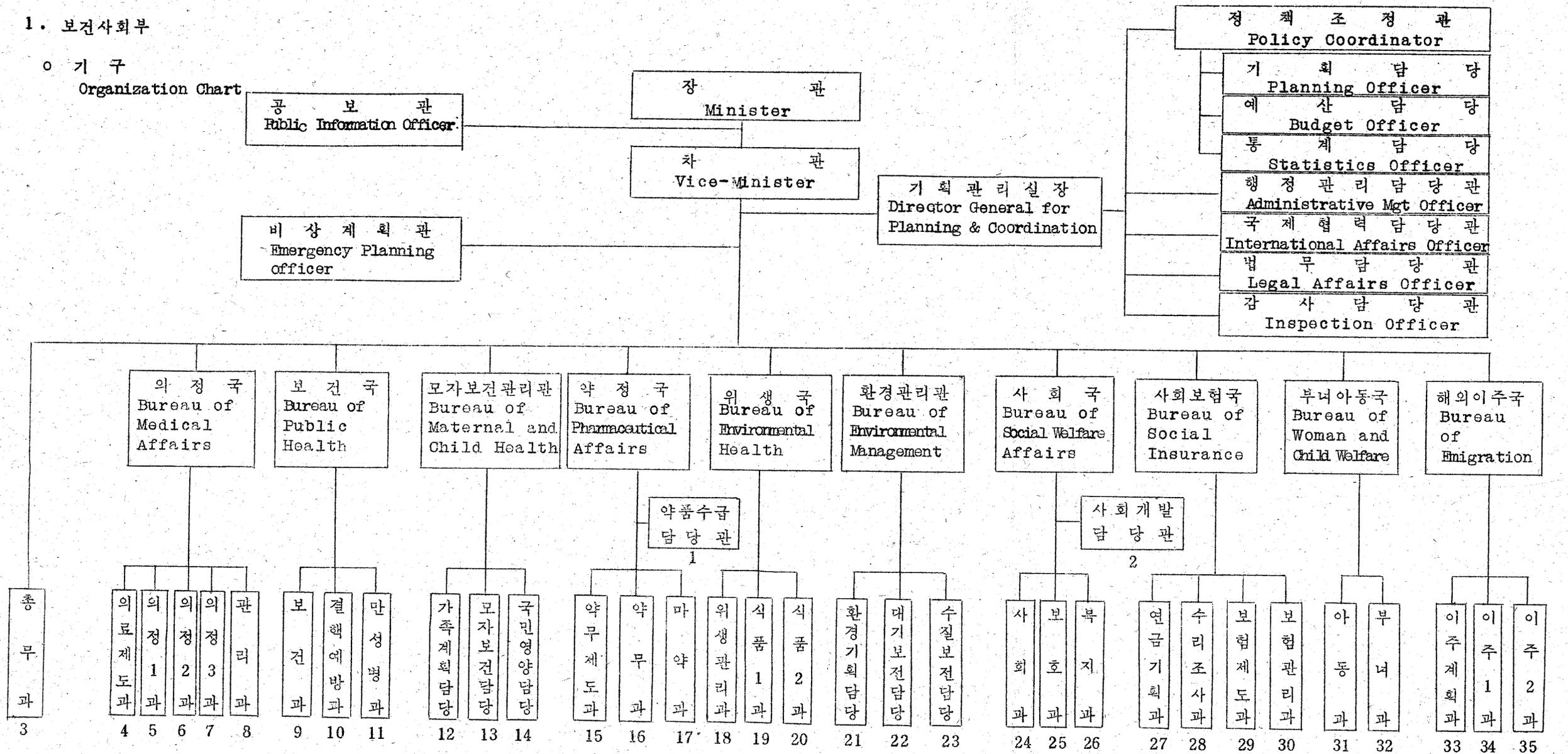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의 본산인 보건사회부 및 도의 보건행정조직과 보건행정의 제일선 기관인 군보건소의 기존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1. 보건사회부

○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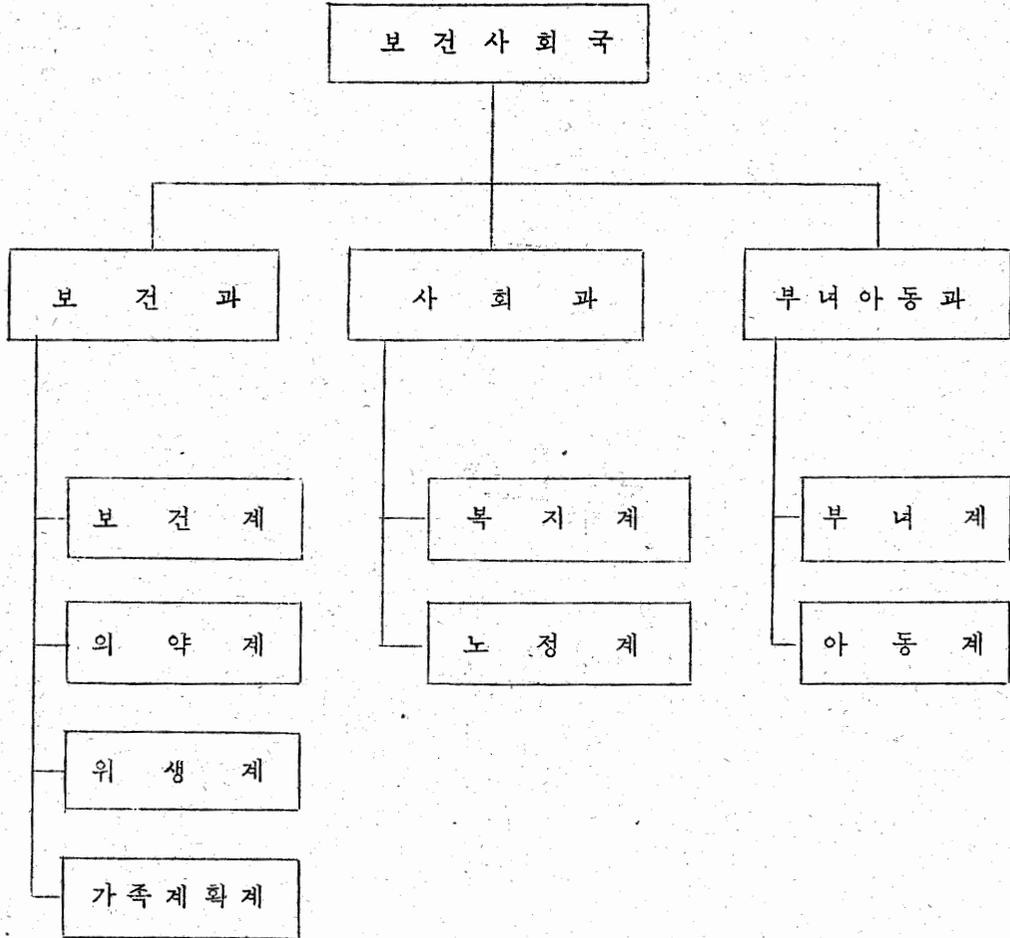
Organization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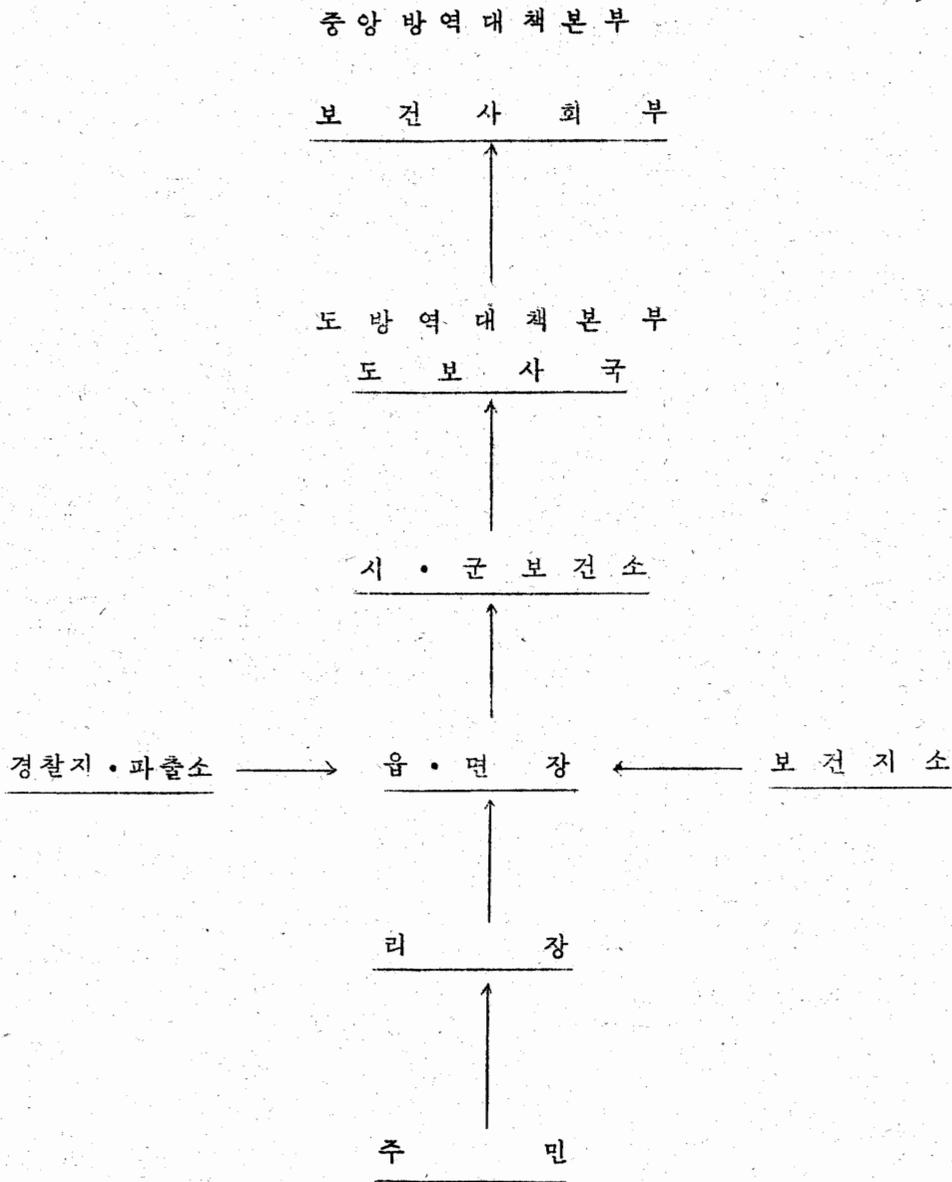
- | | | | | | |
|----------------------------------|---------------------------------|------------------------------------|--------------------------------------|-----------------------------------|----------------------------------|
| 1. Pharmaceutical Supply Officer | 7. Medical Affairs Division III | 14. National Nutrition Officer | 20. Food Sanitation Division · II | 24. Social Affairs Division | 31. Child Welfare Division |
| 2. Social Development Officer | 8. Logistics Division | 15. Pharmaceutical System Division | 21. Environment Planning Division | 25. Relief Division | 32. Woman Welfare Division |
| 3. General Affairs Division | 9. Public Health Division | 16. Pharmaceutical Division | 22.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 26. Welfare Division | 33. Emigration Planning Division |
| 4. Medical System Division | 10. T.B. Division | 17. Narcotic Division | 23. Water Pollution Control Division | 27. Pension Planning Division | 34. Emigration Division I |
| 5. Medical Affairs Division I | 11. Chronic Diseases Division | 18. Sanitation Management Division | | 28. Actuary Research Division | 35. Emigration Division II |
| 6. Medical Affairs Division II | 12. Family Planning Officer | 19. Food Sanitation Division I | | 29. Insurance System Division | |
| | 13. MCH Officer | | | 30. Insurance Management Division | |

2. 도 (예,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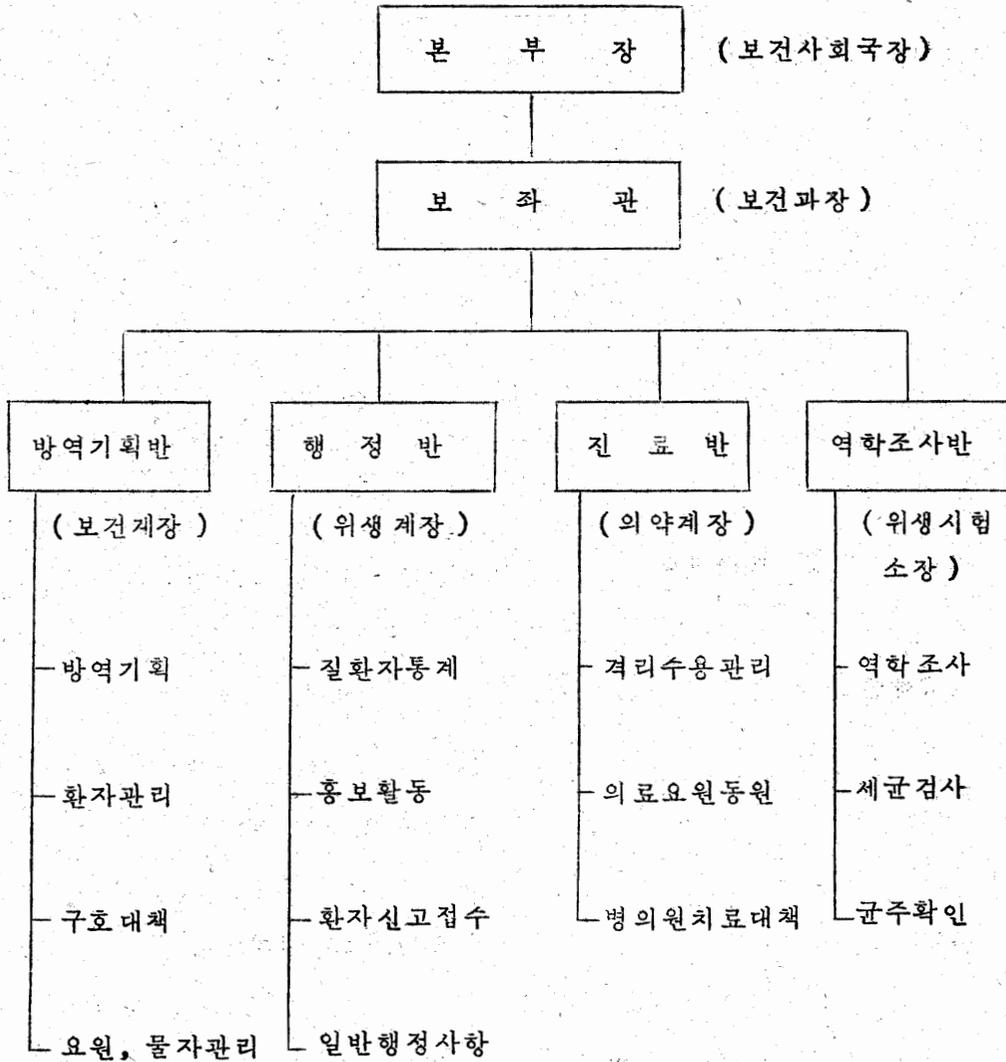
① :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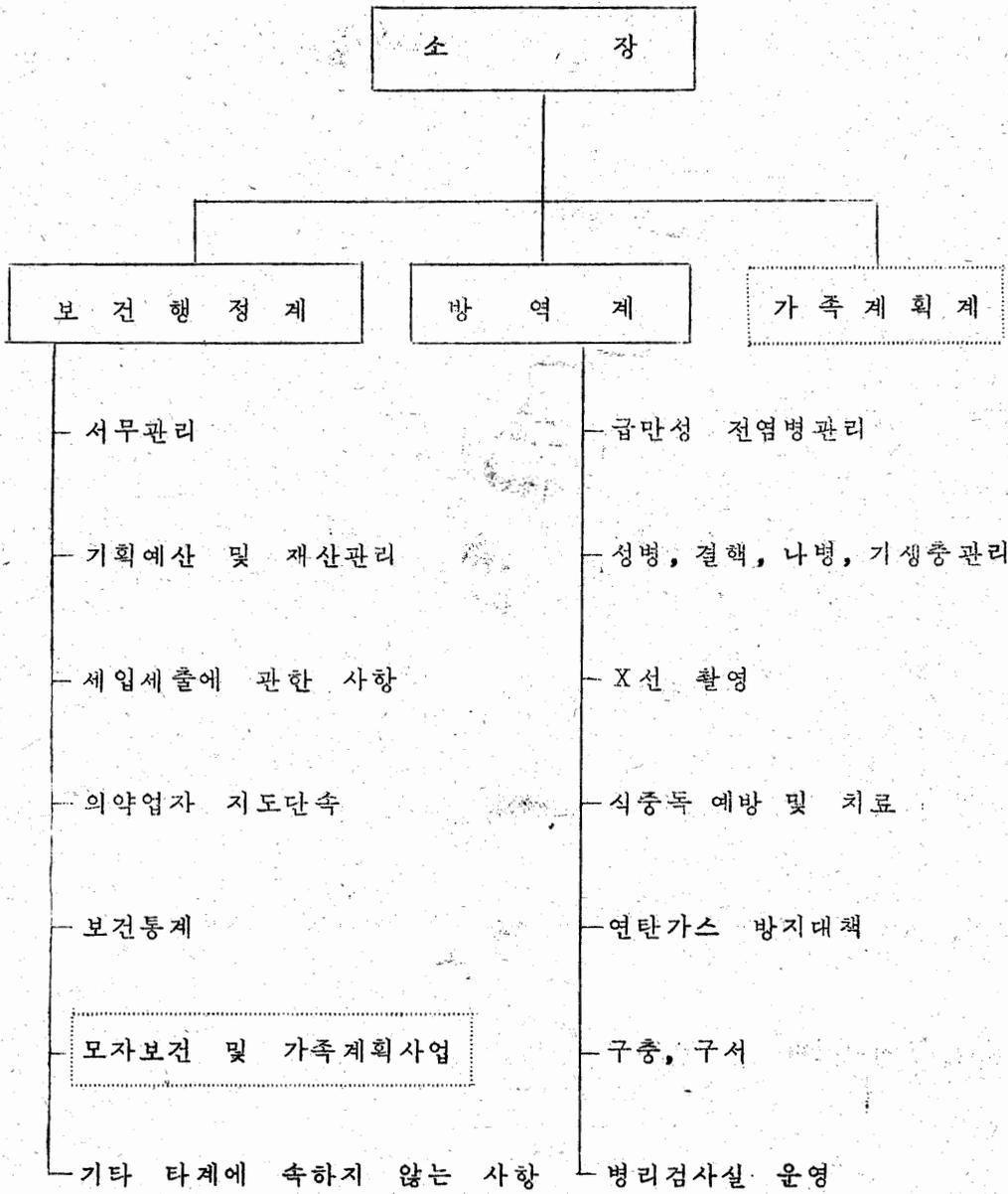
② 전염병환자 신고체계



③ 방역조직기구 및 기능 (예 : 강원도)



3. 군 보건소 (예 : 홍천군 보건소)



1. 보건행정의 지침

가. 계획

1) 조사

가) 생정통계 (Vital Statistics)

나) 질병통계 (Health Statistics)

다) 지역사회 배경조사 (Community Needs) - 인구구성, 문화, 경제, 교통, 교육, 습관, 종교, 기타)

2) 검토와 분류

가) 사업의 중별

나) 사업의 성질

다) 사업의 우선순위

3) 사업의 계획

가) 명확한 목적

나) 방법과 시설이용

다) 대상설정

라) 기간설정

4) 사업의 추진

가) 지도

나) 감독

다) 협조와 조정

나. 보건교육

1) 보건요원의 훈련 및 보건교육

2)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 계몽

다. 시설 및 요원의 이용과 협조

- 1) 의료시설 (의료장비, 검사실 등 기타)
- 2) 민간단체의 협조 (교회, 방송 등)
- 3) 기타 기관의 보건의료원과의 협조

라. 예산의 정확한 수립과 지출

마. 평가사업

- 1) 실시해야 하는 필수사업을 지역사회 의견 조사를 통한 조사로
서 발견 또는 파악하고
- 2) 방침을 정하고
- 3) 종합적인 조정과 협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 4) 기록보고 기타 정보수집을 하여
- 5) 사업의 결과를 평가함

2. Gulick의 행정의 기능과 활동의 구분 "POSDCORB" 활용

- 1) Planning
- 2) Organizing
- 3) Staffing
- 4) Directing
- 5) Coordinating
- 6) Reporting
- 7) Budgeting

3. 계층제의 원칙 (principles of Hierarchy and Scalar process) 적용

4. Simon의 행정적인 능률방법 활용

- 1) 과업의 전문화 (specialization)
- 2) 통제범위의 제한 (span of control)
- 3) 권한의 계층화 (Hierarchy of authority)
- 4) 직원의 분리 (classification of personnel)

5. 직능의 계원칙 (Principles of Function) 적용

6. Line, Staff, Auxiliary Organization 이해

7. 보건소법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

- 1) 보건 사상 계몽에 관한 사항
-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 3) 영양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4) 환경위생,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 5) 학교보건,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 6) 의사사업에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
- 7)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검사
- 8) 결핵, 나병, 성병 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 진단에 관한 사항

- 9)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 10) 공의 지도에 관한 사항
- 11) 의약에 대한 지도사항
-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13) 기타 국민보건향상과 증진

8. 보건소법에 규정된 보건지소 업무

- 1) 보건사상계몽에 관한 사항
- 2) 보건통제에 관한 사항
- 3)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4) 결핵, 나병, 성병 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 진단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군수가 위임하는 사항

9. 공의의 업무

- 1) 보건교육
- 2) 예방접종
- 3) 성병검진 및 진료
- 4) 결핵 및 나병관리
- 5) 환경위생 개선
- 6) 보건통제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보건소장이 위임하는 사항

IV. 한국보건개발연구원

1. 연구원 설립경위

1972. 2. 국제경제대한원조 협의체 (IECCOK) 파리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군립병원 등 소요자금 차관요청

1973. 11. 상기요청에 의거 USAID 조사단 내한
건의사항 : 보건의료수요조사

경비절약형의 보건의료체제 확립

보건기획전담부서 설치

1974. 11.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500 만불 차관도입 요청

1975. 1.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미국제개발처 간에 보건개발차관 사업내용에 관한 의견조정

1975. 8. 보건개발 차관사업 최종계획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

1975. 9. 한국정부 (경제기획원장관) 와 미국정부 (미국제개발처장) 간에 시범사업을 위한 AID 차관 협정체결

1975. 12.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법률 제 2857 호) 공포

1976. 4. 동법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 8061 호)

1976. 4.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발족

2. 차관협정 주요골자

가. 차관액 : 미화 500 만불

나. 차관조건 : (1) 상환기간 : 40년

(2) 이자 : 거치기간 - 10년 연리 2%

상환기간 30년 연리 3%

다. 지불방법 : 후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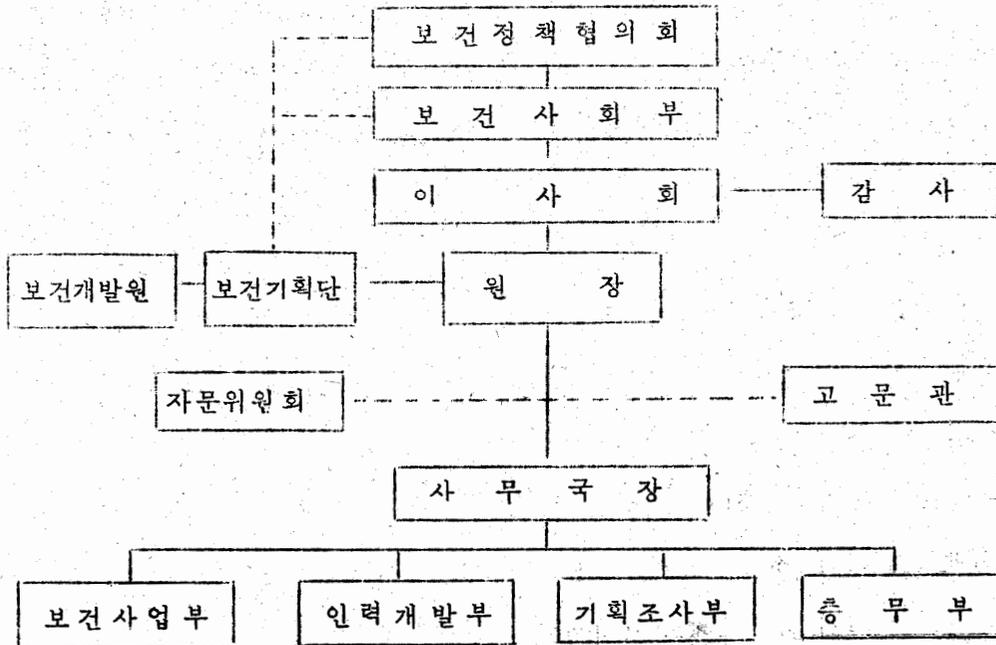
라. 정부의 특별조치 : 정부는 33억원 상당액을 본사업에 투자하고 이중 75% 즉 25억원 상당액(미화 500만불)은 차관금액에서 충당

마. 사업기간 : 협정체결일로부터 5년간

3. 임 무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은 국민보건 전반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보건계획 및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임무로 한다.

4. 기 구



5. 활동내역

1) 보건사업부

- ① 저소득층의 보건수요에 관련되는 기존 의료지원제도의 실태 파악
- ② 합리적인 의료제공체제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③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일정 지역내에서 시범적으로 행하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사업 및 의료보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의 實施
- ④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인력개발부

- 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증진, 질병예방 및 치료를 담당할 보건인력의 발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 ②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
- ③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관련되는 의료요원에게 보급할 홍보지의 발간 및 보급
- ④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연찬회, 토론회 기타 집회행사 및 요원자질향상에 관계되는 업무
- ⑤ 인력활용계획 및 의료요원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⑥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

3) 기획조사부

- ① 국민보건에 관한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② 장·단기 보건의료의 수요조사 및 평가
- ③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 ④ 연구원이 사업계획의 수립
- ⑤ 각종 연구자료의 수집 및 처리분석
- ⑥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⑦ 국가로부터 위촉된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⑧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연찬회 및 조사·연구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식 편람, 기타 자료의 발간
- ⑨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총 무 부

- ① 사무일반에 관한 사항
- ② 직원의 인사·복무·후생에 관한 사항
- ③ 문서의 수발·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 ④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예산의 편성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⑥ 물품·공사의 계약, 물품조정 및 자금지출 등 경리, 용도에 관한 사항
- ⑦ 물품의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연구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연구원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⑩ 결산에 관한 사항
- ⑪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⑫ 청사관리, 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항

- 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⑭ 직인 등 보관, 사용에 관한 사항
- ⑮ 보안, 경비, 당직에 관한 사항
- ⑯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 ⑰ 세무에 관계되는 사항
- ⑱ 직원 후생 및 원우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⑲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마을건강사업

1) 개요와 체제모형

의사를 포함하는 보건요원 및 의료시설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농·어촌주민의 일부는 충분한 현대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문제가 지역사회개발의 한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는 병원 이외에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질병예방을 포함한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은 3개도와 공동으로 착수할 「마을건강사업」을 통하여 시범지역인 홍천군, 옥구군, 그리고 군위군에서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건요원을 개발하며 동시에 기존요원을 재훈련시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점차 전국적으로 실시 가능한 저렴양질형 종합보건의료전달체제를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① 현행제도

현재 군보건소는 질병의 치료, 의약사 감시 및 관리, 가족 계획 등을 담당하는 보건행정제와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등을 주관하는 방역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지소에는 공의가 배치되어 있으며 소수의 보건요원들이 주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면단위에 배치된 보건요원은 보건소장의 기능상 지휘감독과 함께 면장의 행정 지시를 받으며 각각 담당분야인 모자보건, 결핵관리 및 가족 계획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면보건지소장은 의사로 보하고 군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면이하의 보건의료사업을 총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군보건소와 면지소간의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환자의뢰 체계마저도 정립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환언하면 군보건소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면보건지소는 일정한 질병(예: 결핵 등)에 대한 진료 및 보건 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특히 면이하 수준의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제는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며 이러한 점을 「마을건강사업」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② 계획개요

「마을건강사업」은 3개 시범군에서 종합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하여 시범지역내의 농·어촌 주민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양질의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의 보건요원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되고 재훈련되며 이에 추가하여 1차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새로운 유형의 보건요원이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고 일부 기존 보건시설이 신축 또는 증·개축되며 마을단위에서는 질병예방에 대한 제공사업이 강화된다. 3개 시범지역중 홍천 및 군위군에서 「마을건강사업」이 시도하는 새로운 체계는 1차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3단계 서비스 및 의뢰체제」이며 사업방향의 조정,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및 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현지 행정기관과 가일층 긴밀히 협조토록 한다.

특히 홍천군에서는 마을건강어머니 대동회를 벽지주민의 보건 의료자립 기반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앞에 언급한 2개 지역과는 달리 옥구군의 「마을건강사업」에서는 기존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는 별도로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건강증진기구(HMO)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③ 체제모형

「마을건강사업」이 시도하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새로 조직 운영될 통합 3 단계제 (Three-tired System)
의 보건의료요원 및 시설을 통하여 제공된다.

홍천군에서 1차보건의료의 제 1 단계는 인구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주민의 보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을건강상담소」가 설치되어 새로운 유형의 건강요원인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원의 직접 감독하에 간단한 처치 및 질병예방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마을건강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보건진료지소로 의뢰한다.

각 리 또는 자연부락에는 마을건강원에 의해서 운영될 마을건강상담소가 설치되며 이들 상담소는 주민조직 및 주민대표가 제공하는 기존 공공시설의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각 마을건강상담소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키트 (Kit)는 본 연구원이 공급한다. 또한 마을단위에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자조기반을 조성하고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건강협동조합이 개발 육성된다.

제 1 차 보건의료의 제 2 단계는 새로운 유형의 보건요원인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들 보건진료원은 경험이 많은 정규간호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으로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집중훈련을 약 1년간 추가로 받은 후 마을

건강원이 의뢰한(의사가 담당하기에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보건진료원은 지역 내 몇개 마을에 대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새로 설치되는 보건진료지소에 배치되며 이의 운영책임을 지게된다. 그 외에도 보건진료원은 마을건강원의 활동전반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시에는 마을건강원의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주로 면사무소에서 근무중인 모자보건, 결핵관리 및 가족계획요원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부문에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훈련될 것이며 훈련 이수후에는 개편된 보건진료소 혹은 보건진료지소에 배치될 계획이다.

이들 보건진료보조원은 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들은 종전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많은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나, 반면 지리적으로는 좁은 지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맡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차 보건의료의 제3단계는 -기존 민간기업의 또는 공의를 「마을건강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제공된다. 보건진료의가 근무할 보건진료소는 가능한 한 기존 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한다.

군위군에 있어서의 1차 보건의료의 제1단계는 몇개리의

약 1,500 ~ 2,000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보건진료분소에서 제공된다. 이 보건진료분소에는 기존 간호보조원으로서 재훈련된 보건진료보조원이 배치되어 홍천군의 마을건강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옥구군의 경우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5개소의 원격진료소(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병원분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1차 보건의료의 제1 단계는 인구 1,500명당 1명씩 배치되는 보건진료보조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제2 단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격진료소(보건진료소)에 의뢰된다. 도서지역은 19개 유인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선유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보조원을 배치하여 제1 단계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2 단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선으로 의뢰된다.

2) 의뢰체제

보건의료서비스는 마을수준에서 홍천의 경우 마을건강상담소에서 마을건강원에 의하여, 군위의 경우 보건진료분소의 보건진료보조원에 의하여 최초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보건진료지소에 있는 보건진료원에게 의뢰하고 보건진료원이 처리할 수 없는 환자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의에 의뢰케 된다. 환자들은 가능한 한 말단단위에서 1차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상위시설로 의뢰하도록 의뢰체제가 개발, 활용된다.

이러한 체제는 군보건소장의 통제하에 있게되며 따라서

보통 보건관계요원은 과거와는 달리 군보건소장의 행정지휘 하에 일원화 된다.

옥구군은 보건진료보조원→원격진료소→(보건진료소)→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의뢰체계를 가지며 이중 도서지역은 보건진료보조원(13개 도서의 보조진료분소)→병원선→도립군산병원의 의뢰체계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역	단계	주요원	시설	대상
홍천군	제 3 단계	의사	보건진료소	면 : 10,000-30,000명
	제 2 단계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보조원	보건진료지소	몇개리 : 2,000- 10,000명
	제 1 단계	마을건강원	마을건강상담소	리 또는 부락 : 1,000명
군위군	제 3 단계	의사	보건진료소	몇개면 : 20,000- 30,000명
	제 2 단계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지소	면 : 5,000-10,000명
	제 1 단계	보건진료보조원	보건진료분소	몇개리 또는 부락 : 1,500-2,000명
옥구군	제 2 단계	전문의 또는 일반의 및 보건진료원	원격진료소 (보건진료소)	1면 또는 몇개면 16,000-23,000명
	제 1 단계	보건진료보조원	보건진료소 및 분소	리 또는 몇개부락 : 1,500명

3) 기구

① 보건진료분소

보건진료분소는 각마을에 있는 새마을회관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며 보다 충분한 기재등을 갖추게 된다. 위와 같이 보건진료분소가 설치됨으로써 지역사회 발달수준에까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보건진료 보조원이 배치되어 종래의 읍면보건요원의 담당지역보다 담당하기 쉽게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의 보건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② 보건진료지소

보건진료지소는 보건의료전달체제상 환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주요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 1차진료 및 응급처치
2. 보건교육 및 환경위생
3. 보건진료분소 및 마을건강 상담소의 업무지도 감독

보건진료지소의 설치는 대상인구의 규모와 지리적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요원은 1명의 보건진료원과 2명의 보건진료보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보건요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단한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한다. 보건진료지소 수준에서 치료불가능한 환자는 차상위 시설로 의뢰한다. 지역사회 의사는 차상위 시설인 보건진료소에 위치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각 보건진료지

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③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환자 의뢰체제상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는 최
초의 시설이다. 보건진료소는 면수준에 위치하며 보건의료전
달 체제상 중간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위시설에서 의뢰되어 오는 환자진료, 응급환자치료 및
상위시설로의 환자의뢰
2. 모자보건, 가족계획, 학교보건, 보건교육 및 환경위생사업
3. 보건진료지도, 분소 및 마을건강상담소의 업무조정 지도
및 감독

보건진료소요원은 의사, 보건진료원, 보건진료보조원 및 기타
요원들로 구성한다.

洪川은 면수준에 인구 약 10,000명당 1개 비율로 보건진
료소가 설치되나 沃溝는 1~3개면당 1개 보건진료소가 설
치되며 單威 전체 지역을 3등분하여 각지역마다 2개~4개
면당 1개의 비율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

4) 인력

① 마을건강원

「마을건강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이념인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참여를 적극화하는데 주력하며 소비자인 지역사회주민을 행정, 기술 및 여러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개편되는 보건의료서비스전달 체계에 유효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사회주민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건요원인 마을 건강원을 개발하여 질병예방을 포함하는 간단한 보건서비스의 제공 및 이송체제를 통한 환자의퇴등의 매우 경미한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마을건강원은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을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가운데서 마을대표 또는 새마을 기구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중 郡保健運営委員會와 본연구원의 합동심사에 의하여 1명을 선발하여 훈련한다.

마을건강원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마을수준에서 정상분만 및 산전산후 지원
2. 영유아보건, 영양지도, 가족계획업무를 위한 교육 및 피임기구 공급
3. 환자발견 및 마을의약함 관리

마을건강원은 지역내를 순회하는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계속

적인 지도와 훈련을 현지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보조원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

마을건강원들은 현지실습을 위주로 하는 이론 및 실기등 모두 8주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보수는 점차 부락별로 개발되는 마을건강협동조합에서 지급하게 된다.

② 보건진료보조원

「마을건강사업」에서는 기존보건요원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며 보건진료보조원들은 현재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보조원 중에서나 또는 신규로 선발하여 현재보다 종합적인 1차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보건진료소에는 지역에 따라 1~3명씩 배치될 것이고 각 보건진료지소에는 2명씩 배치된다.

보건진료보조원들은 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지도·감독하에 아래기능을 수행한다.

1. 정상분만 및 산전 산후관리
2. 예방접종, 결핵환자색출 및 관리
3. 경미한 외상 및 질병치료
4. 가족계획상담, 영양지도, 보건교육 및 가검물수집

보건진료보조원들은 기초임상 이론 및 현지실무를 포함하여 8주간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다.

③ 보건진료원

의사에 의한 진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수요를 충족

시키고 장기적으로 새로이 개편될 보건의료전달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새로운 요원이다.

이들 보건진료원들은 의사지도·감독하에 경미한 환자의 진료 및 원격의료활동을 하며 신설되는 보건진료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와 지역사회간에 교량역할을 맡는다.

보건진료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환자의 확인, 문진 및 신체검사와 필요한 병리검사 실시 또는 의뢰
 2. 질병예방 허용된 범위내에서의 처치와 의사지시에 따른 진료활동
 3. 환자의 경과상태관찰(특히 만성질환) 및 보건진료소와 민간 개업의에게 환자의뢰
 4. 정상분만개조, 산전 산후관리, 보건교육 및 진료기록 유지
- 보건진료원들은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병원의 협조하에 본 연구원에 의하여 필요한 기술훈련을 받으며 교육기간은 후보자의 교육배경과 현지경험에 따라 약 1년정도로 한다. 이와 같은 훈련목적은 보건진료원들로 하여금 의사의 감독하에 현지에서 기초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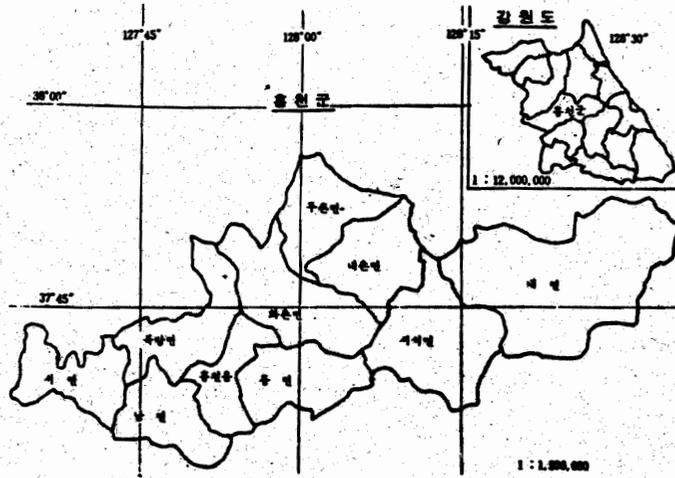
④ 지역 사회 의사

의사 (군 보건소장 , 보건진료소 의사 , 지역민간개업의 또는 병
원선 의사등) 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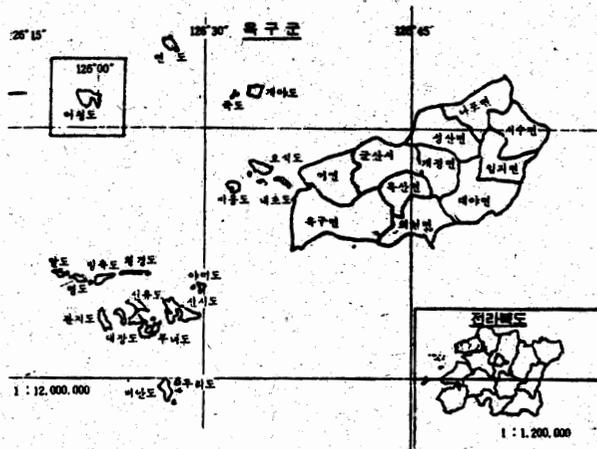
- 1 . 지역 사회 보건 의료
- 2 . 국민보건의료 욕구충족
- 3 . 지역 사회와 더불어하는 연구 및 봉사
- 4 . 보건 의료봉사업무의 조직화
- 5 . 행정 관리 및 감독
- 6 . 보건요원의 지도 감독

5) 마을 건강사업지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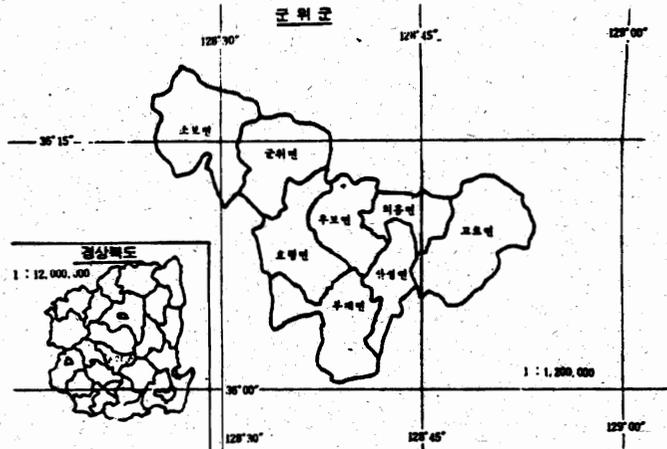
① 홍천군



② 옥구군



③ 군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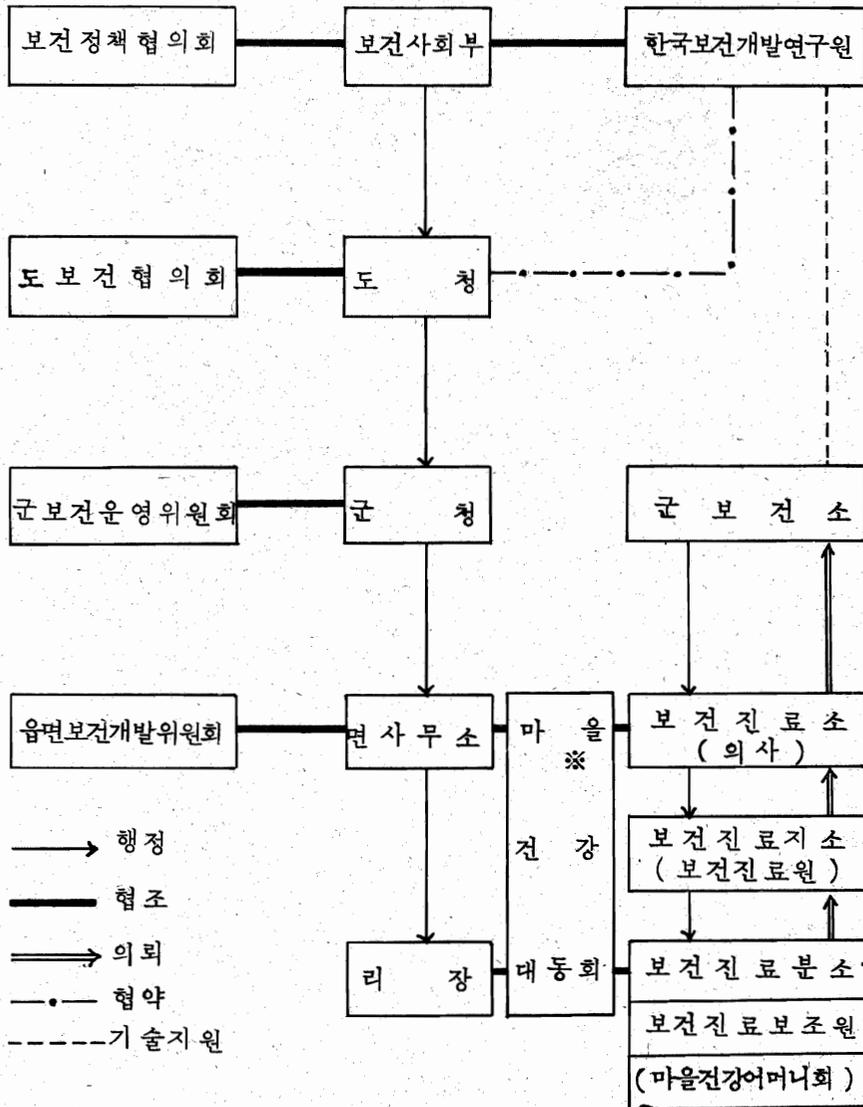
6) 요약

1. 시범지역별 사업운영 (마을건강사업) 계획

- 가) 목적 : 주민의 2 / 3 이상에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여 전
반적 보건수준의 향상
- 나) 방침 : 기본 보건의료 제공 체계상 문제점의 효율적 개선
및 보완
- 다) 일선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강화 및 사업조직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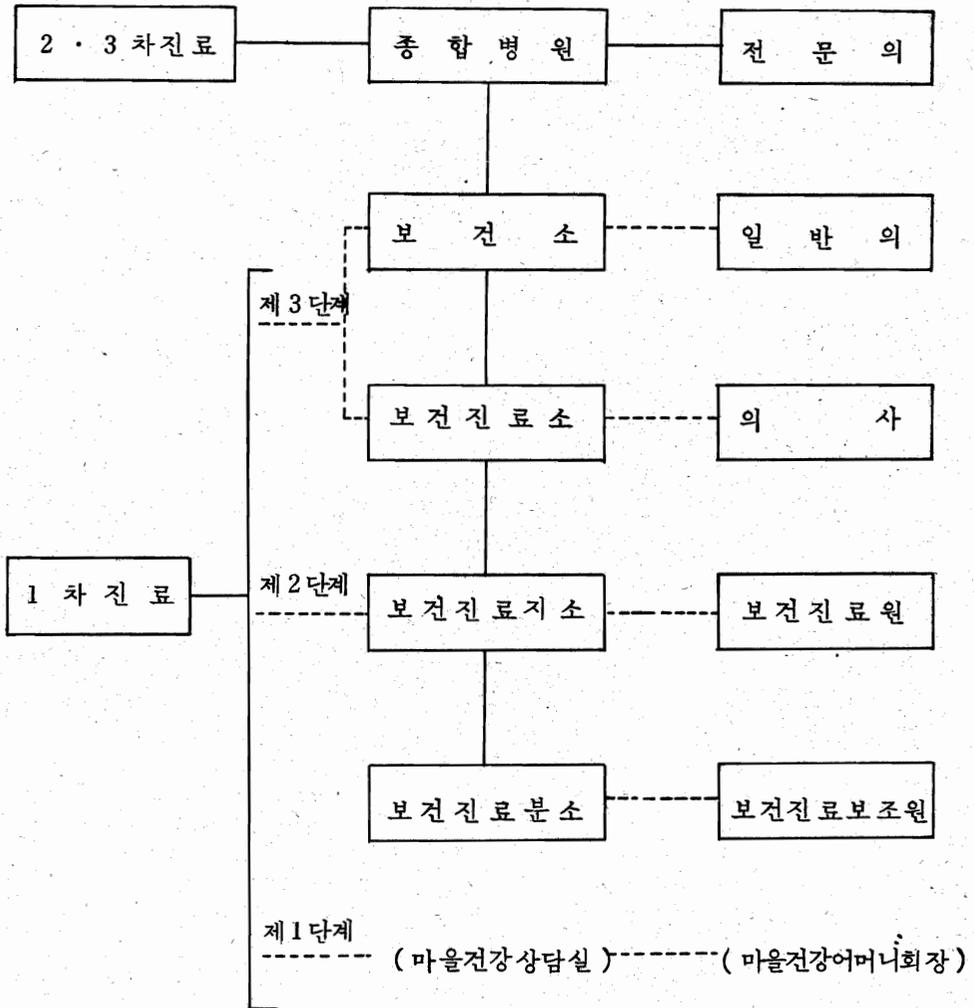
- | | |
|--------|--|
| 군 보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및 치료 기능 강화 ○ 정보 관리체계 확립 ○ 보건요원 감독 및 행정체계의 일원화 |
| 면 보건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진료지소로 개편 ○ 및 요원 배치 강화 |

(표 1 : 사업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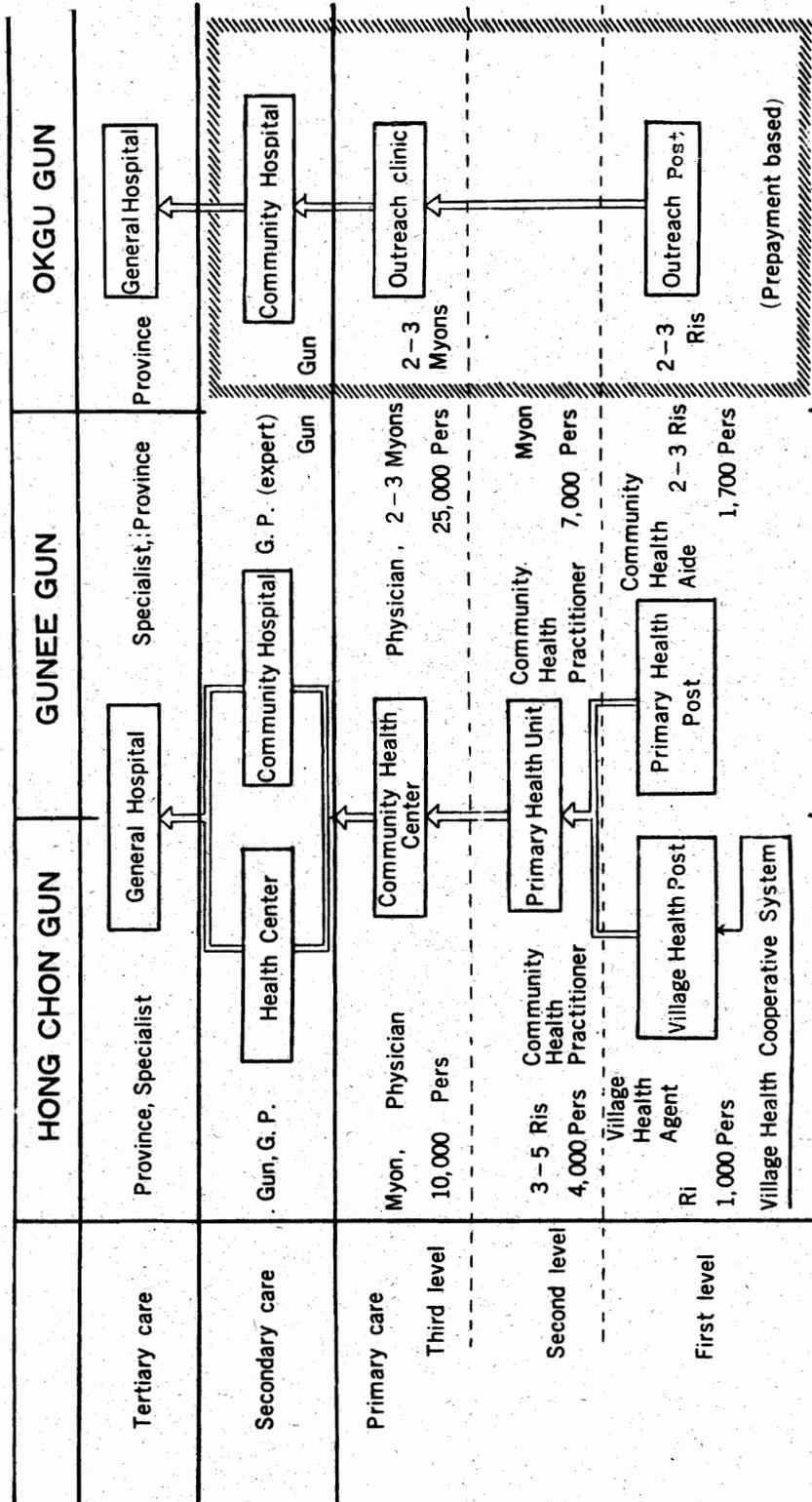


※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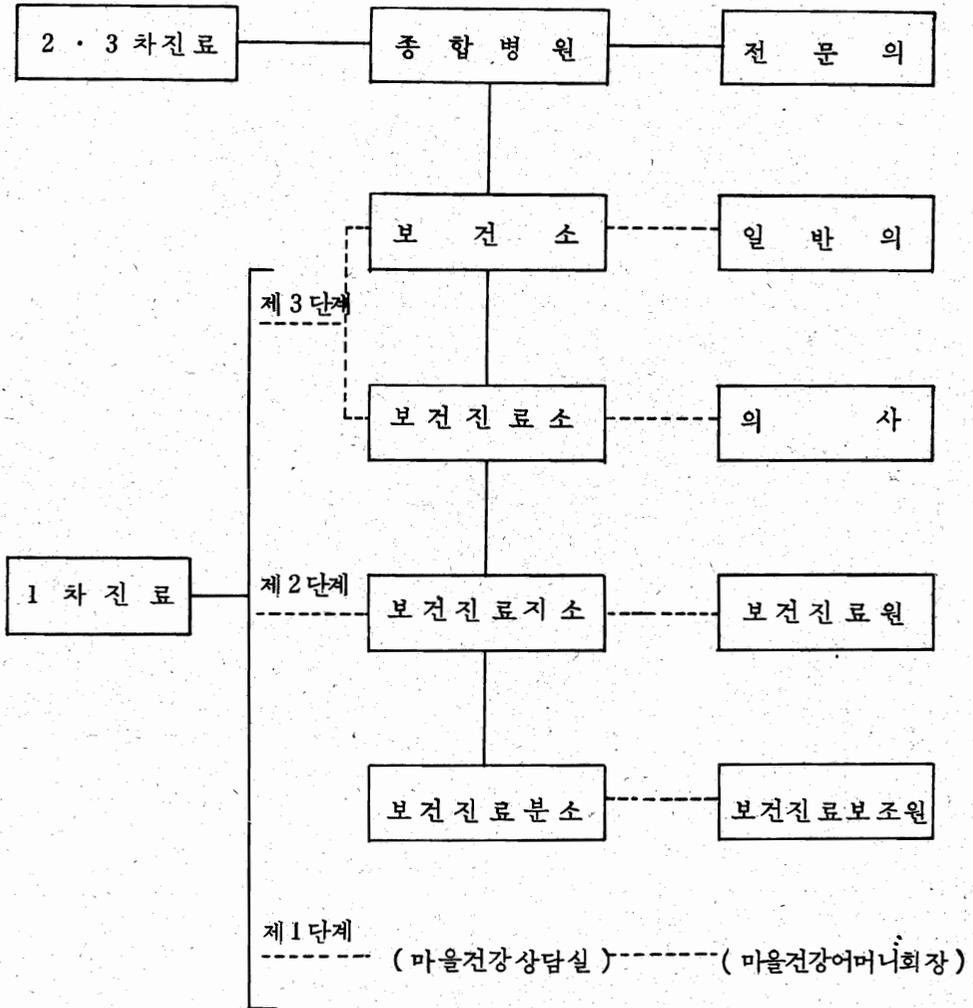
2. 진료 및 의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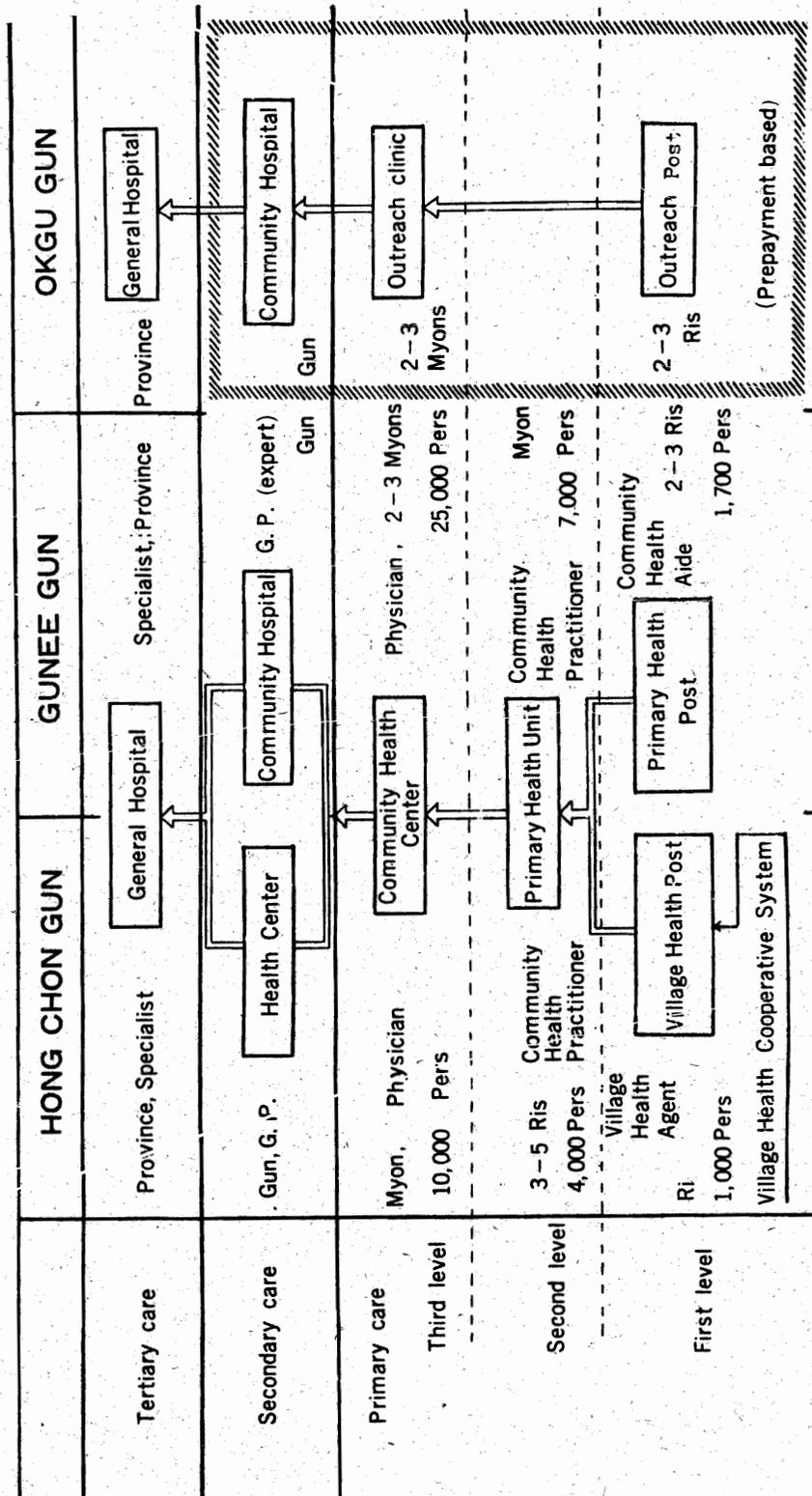
3. "MAUL GEON-GANG SAUP" SERVICE SYSTEM



2. 진료 및 의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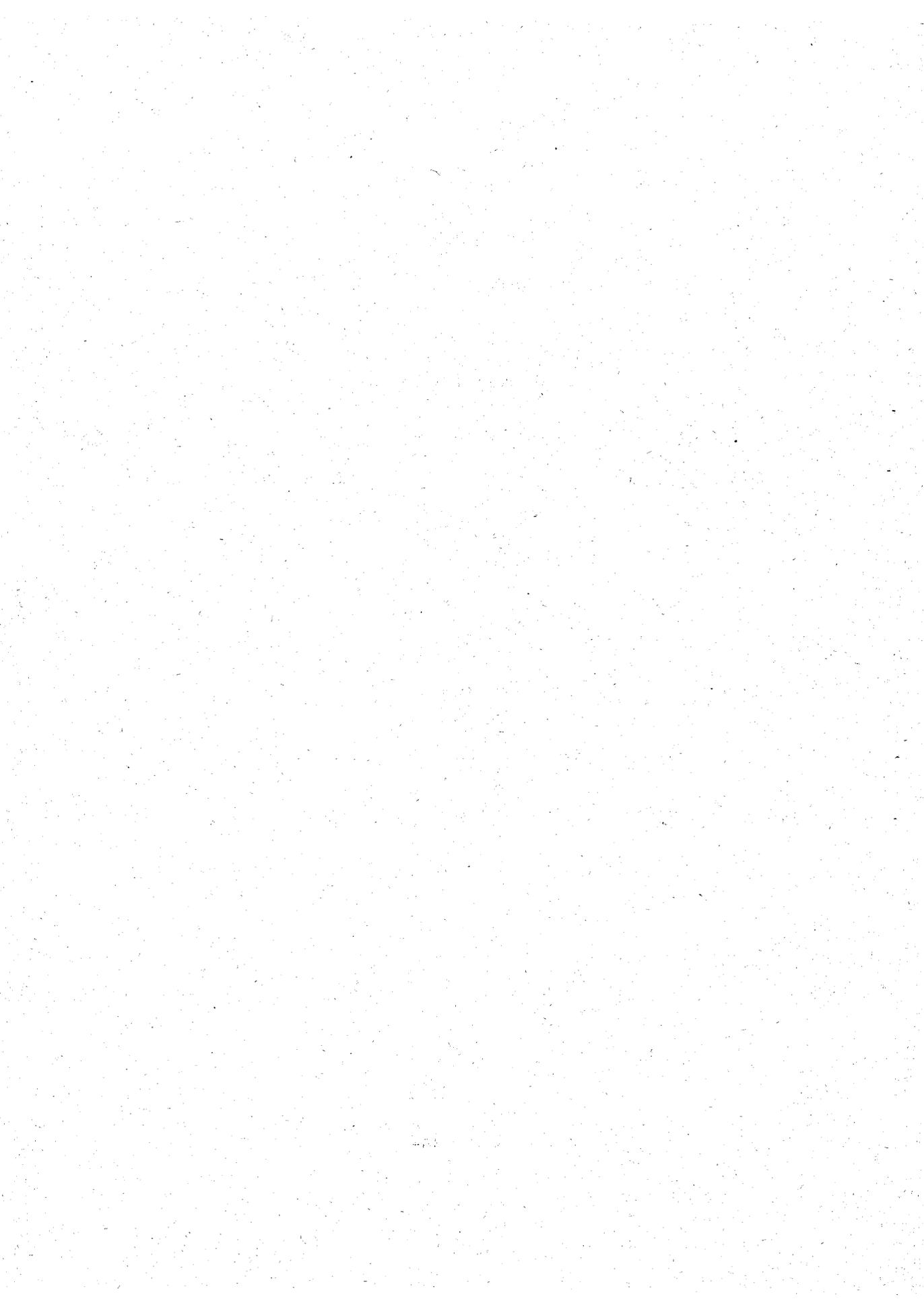


3. "MAUL GEONG-GANG SAUP" SERVICE SYSTEM



부 록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37
2.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시행령	43
3. 훈련규정	48
4. 보건진료원 훈련장학금 지급규정	57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75.12.31 법률 제 2857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로 하여금 국민보건 전반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부분의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보건계획 및 보건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설립)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 4 조 (정관) 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등 기) 연구원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업 무) ①연구원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민보건에 관한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합리적인 의료제공체제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3.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 (일정지역내에서 시범적으로 행하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사업 및 의료보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 및 평가
4. 장·단기 보건의료의 수요조사 및 평가
5.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6.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국가로부터 위촉된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②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시범사업의 목적과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히 경미한 의료행위에 한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제 7 조 (승 인 사 항) ①연구원의 매년도의 사업계획·예산·결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임 원)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임원중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참임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명) ① 원장은 보건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보건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원장의 직무)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12 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다만, 원장인 이사는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3 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의 기금은 정부와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 14 조 (출연금) ①정부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7 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단체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9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20 조 (보건정책협의회) ①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건정책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보건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벌칙) ①제 18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 19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2 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최초 출연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제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국내시범 사업에 대한 준용)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 6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시행령

(76.4.1 대통령령 제 8061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립등기)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제 3 조 (이전등기) ①연구원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소제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 2 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 2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 6 조 (첨부서류)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정관과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출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중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종사자의 의료행위) (1) 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행위에 한하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

1. 외상 등의 응급처치
2. 예방접종
3. 피임기구의 삽입
4. 정상분만의 개조
5.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의 투여

②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 9 조 (출연금의 교부)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제상하여 행한다.

제 10 조 (기금의 운용) ① 연구원의 기금은 별도의 제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1 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절차) ①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연구원의 재산목록을 갖추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건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정책협의회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보건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그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건 및 의료제공체계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매년도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제 13 조 (위원장의 직무) · ①협회의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위촉위원) 법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 (회의) ①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과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획단의 장은 협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협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6 조 (감사) ①협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소집, 의안 및 심의된 사항의 정리, 회의록의 작성 기타 연락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 (수당 등) 협의회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보건기획단) ①협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개발계획과 그 정책수단의 연구
2.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3. 보건정책자료의 수집
4. 기타 협의회의원 위원장이 지시한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③기획단의 구성과 그 직원의 임면 보수 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원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련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원법 제 6 조제 1 항제 6 호와 연구원 정관 제 4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이하 "마을건강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훈련목표)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하는 요원 및 관계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진료원에게 연구원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알맞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 지역사회에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대상, 방법 및 교육

제 3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직종 및 훈련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당해연도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전문교육(보건진료원)훈련과정
2. 직무교육훈련과정
3. 기초교육훈련과정
4. 마을요원훈련과정
5. 보수교육훈련과정

6. 특수교육훈련과정

②제 1 항 각호의 훈련과정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대상) 제 3 조제 1 항의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할 보건의료요원으로 의사, 보건진료원, 약사, 조산원, 간호원, 보건진료보조원 및 각종 의료기사등 소정의 면허와 자격소지자
2.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할 보건교육관, 보건통계관, 위생관, 행정요원 및 마을건강원
3. 마을건강사업을 직접·간접으로 지도·감독 또는 지원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 (교육기간 및 내용) 교육기간, 교과내용 및 교과목의 시간 배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당해연도의 훈련계획에 의거,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교육위탁과 용역) 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 3 조제 1 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존교육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위탁과 용역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교육방법과 수업) ①교육방법은 강의, 실습, 분임연구, 발표회, 세미나 및 견학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수업시간과 교육장소는 당해연도 훈련계획에 의한다.

③전항의 수업시간중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제 8 조 (교재) 교재 및 기타 필요한 용품은 무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강사) ① 강사는 교육과목별로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직원 또는 외부인사에게 위촉한다.

② 외부인사로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원 임직원인 강사가 연구원 소재지 일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액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훈련계획, 피교육자선발, 차출, 등록 및 제적

제 10 조 (훈련계획) ① 원장은 매년 다음해의 교육훈련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인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훈련개시 2개월전에 관계기관과 행정상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훈련대상자 선발과 차출) ① 신규 보건의원의 선발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발요강에 따른다.

② 기존요원에 대한 훈련대상자는 훈련개시 1개월전에 연구원이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소속된 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자 차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교육자로 지명 차출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또는 교육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1주일전까지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등록) 피교육자로 지명 차출된 자는 소정기일내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당해 훈련개시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등록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등록장소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13 조 (등록의 거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신체검사결과 전염성질환으로 판명된 자
2. 대리등록자
3.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14 조 (복귀조치) 원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복귀조치하고 해당자가 공무원인 경우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훈련생의 소속기관장이 정당한 사유로 복귀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원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5 조 (훈련중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리교육을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한 자
3. 수업중 무단조퇴 또는 이석한 자

4. 시험중 부정행위자

5. 수업을 현저하게 태만히 한 자

6. 중간평가성적 및 종합시험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7. 기타 연구원의 지시에 의한 훈련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제반규칙을 위반함으로써 훈련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

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중지처분을 하였을 때 해당자가 공무원인 경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적 및 평가

제 16 조 (성적 및 평가) ①교육훈련효과의 향상과 측정을 위하여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 종류 및 기준은 당해연도 훈련계획에 의한다.

②수료생의 성적은 연구원에 보관하며 필요시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수료 및 포상

제 17 조 (수료증) ①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을 履修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포상) ①포상은 상장과 표창장으로 구분한다.

②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자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우등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훈련기간중 자치활동 및 기타 훈련생활 전반에 걸쳐 특히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우등상 또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여비 수당 및 진료

제 19 조 (여비 및 수당) 훈련생에게는 그 과정과 직종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 참석에 필요한 여비(왕복 교통비 실비, 숙박비 실비, 식비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응급환자의 진료) 훈련생으로서 훈련도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응급처치에 소요된 경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훈련생 지도

제 21 조 (일반준수사항) 훈련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교관 및 강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야 한다.
3. 일과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수강시간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휴게시간과 주식시간에 한하여 면회할 수 있다.
5. 연구원의 물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파손·분실시는 변상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괴 책임소재가 불명할 시는 공동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6. 청사구내에서는 정숙히 하여야 한다.
7. 강의실 및 청사내에서 고성, 음주, 방가를 금한다.
8. 교육기간중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9. 교육기간중 결석, 조퇴, 결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훈련생 자치활동

제 22 조 (자 치 회) ① 훈련의 효율화, 자치적인 규율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훈련생 자치회 (이하 “ 자치회 ” 라 한다) 를 둔다.

② 제 1 항의 자치회 임원으로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 및 당번을 둔다.

③ 회장 및 간사는 자치회에서 선출하며 당번은 자치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과 간사는 임시로 지명할 수 있다.

제 23 조 (자치회의 임무) ① 자치회 회장은 각 과정의 자치회를 대표하여 연구원과 훈련생간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훈련생을 대표하여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건의

2. 질서유지

3. 당번의 임무부여

4. 기타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당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칠판과 교탁의 정리 청소

2. 통풍, 채광 조절

3. 난방조절 및 관리

4. 실내미화와 청소

5. 강의실내의 화재도난 방지

6. 기타 수업휴식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제 9 장 학사위원회

제 24 조 (학사위원회) ① 각 과정의 심의, 교재편찬, 교육효과의 측정과 교육발전 및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1 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이를 소집한다.

제 25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보건진료원훈련장학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이하 「 연구원 」 이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할 우수한 보건진료원을 확보 양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보건진료원 훈련생에게 훈련기간중 훈련장학금 (이하 「 장학금 」 이라 한다) 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 (이하 「 훈련장학생 」 이라 한다) 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고 시범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의뢰하여온 보수를 받지 않은 보건진료원 훈련생으로서 보건진료원 훈련과정 이수후 일정기간동안 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할 것을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거 서약한 자이어야 한다.

제 3 조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보건진료원 교육훈련과정중 이론 및 병원실습기간을 그 지급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장학생정원 및 장학금액) ① 훈련장학생의 인원수는 연구원장이 정하는 보건진료원훈련계획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훈련장학금의 1인당 월간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하되 월지급액이 보건진료원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지급방법) 훈련장학생의 장학금지급은 훈련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당해월분을 매월초에 이를 지급한다.

제 6 조 (의무의 이행) 훈련장학생으로 연구원훈련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범지역에서 마을건강사업에 3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제 7 조 (훈련장학금의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장학훈련생이 연구원훈련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이 정지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①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별지 2 호서식에 의한 고지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지시된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연구원훈련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중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장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련기간중 훈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
2. 1년미만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한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

3. 의무복무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을 이행한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의 2분지 1

4. 의무복무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을 이행한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의 3분지 1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본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훈련장학금의 반환면제) 연구원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은 훈련장학금의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불구폐질자가 되었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5. 기타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0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성 별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면허번호	발급년월일		

본인은 보건진료원의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3년동안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보건시험사업(마을건강사업)에 종사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귀원의 제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장학금의 반환 등 귀원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재정보증인 연서로서 이에 확약합니다.

197 년 월 일

보건진료원훈련생

①

보증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①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①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 2 호서식

보건진료원 훈련 장학금 반환 고지서

제 호

성 명		훈 련 번 호	
주민등록번호		면 허 번 호	
주 소			
반환 고지 액	원	내 역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보건진료원 훈련생 장학금 지급규정 제 8 조에 의하여 귀하가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환을 고지하너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

㉠

